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점자형 선거공보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갈음규정 삭제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3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점자형 선거공보 갈음규정 삭제 등	4
2.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 매체 제출 의무화 등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65조제4항 단서).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제11항).

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

1.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점자형 선거공보 갈음규정 삭제 등
(안 제6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 ----- -----, ----- -----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최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중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비율은 전체 후보자 중 최저 19%에서 최대 96%에 이르는데 비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 제출 비율은 전체 후보자 중 최저 0.2%에서 최대 14%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후보자들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출 보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공직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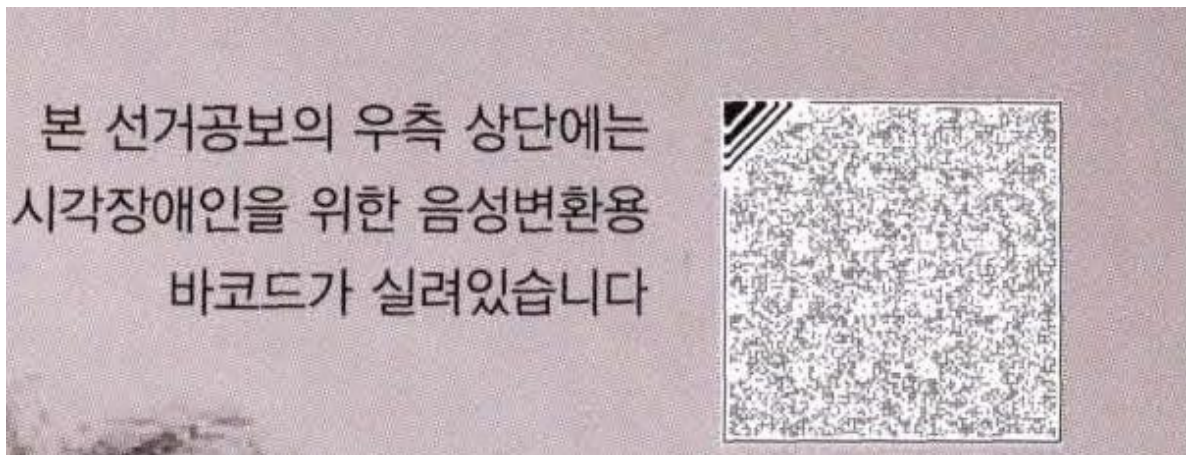
구 분		후보자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비율)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제출비율)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작성·제출비율)
제20대 대통령선거		14	11 (79%)	2 (14%)	10 (7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도지사	55	53 (96%)	2 (4%)	35 (63%)
	교육감	59	54 (92%)	4 (7%)	32 (54%)
	기초지자체장	570	511 (90%)	53 (9%)	89 (16%)
	광역의원 (지역구)	1,432	483 (34%)	10 (1%)	52 (4%)
	기초의원 (지역구)	4,139	766 (19%)	8 (0.2%)	128 (3%)
	비례광역의원	97	77 (79%)	7 (7%)	50 (52%)

	비례기초의원	379	188 (50%)	2 (0.5%)	74 (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737	666 (90%)	53 (7%)	406 (5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글을 보거나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에 저장한 뒤,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를 통해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수단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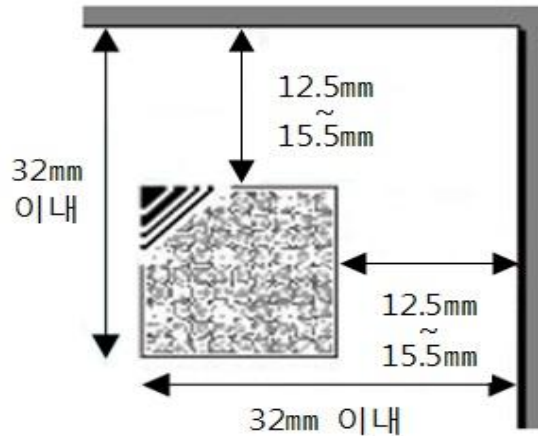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 우측 상단 모서리에 위치하며, 매 홀수면 상단에도 있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통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인식하면 바코드가 위치한 페이지의 내용이 스마트폰 화면에 문자와 숫자로 표시되고, 문자와 숫자를 확대하여 볼 수 있음. 또한 음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을 수도 있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 방법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 표기 예시 〉

- 모양 : 정사각형
- 크기 : 가로와 세로 크기를 최대 18mm×18mm 이내로 함
[권장 크기 15mm×15mm]
- 위치 :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1면) 우측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32mm 크기의 정사각형 내에 위치하도록 함.

※ 매 흡수면 우측상단에 표시

※ 해상도 : 최소해상도 300DPI[권장 해상도 600DPI]

※ 색상 : 바코드 색상과 바탕색 구분을 위해 바코드 외곽 테두리 1mm 이상을 흰색으로 적용

※ 코드 저장 데이터 :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되므로 반드시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야 함.

그런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고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같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모두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점자출판시설 증설 등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량 증가에 대비하는 조치 없이 대체 수단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시설의 증설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 매체 제출 의무화 등(안 제65조제11항 등)

개정안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경우 디지털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u>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u>	④ ----- ----- ----- ----- ----- ----- ----- ----- ----- ----- -----한다.

⑤ ~ ⑩ (생략)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⑫ ~ ⑭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략)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후보자는-----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에 한한다)-----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전단에 따른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⑫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른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제14항-----

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략)	----- ----- 6. ~ 1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의 형식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경우 디지털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고,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선거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작성방법을 문자 형식으로 제한할 경우 PC,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택권을 축소할 소지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 시 시각장애선거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그림파일을 제외하거나 대체텍스트로 입력하고, 문자·음성·DAISY(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오디오·텍스트 동시 제공) 등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제도 도입 직후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시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중심으로 저장매체(USB)가 컴퓨터 등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일부 후보만이 USB를 제공하여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장매체(USB)를 제공하기보다 선거공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디지털 파일만 제공하는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